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6. 30.

발 의 자 : **천병태, 서경환, 권태호, 김경환, 이복희, 신성봉, 김영길, 이효상, 김순점, 강혜순, 오세라** (11명)

1. 개정이유

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와 그 부모에게 적정한 예우를 통하여 가족의 화목 도모

나.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안 제8조, 제24조제2항 및 제4항)

나.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2조)

○「공무원증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다. 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 제도 신설(안 제24조제12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 또는 신병교육대 퇴소 당일 특별휴가(1일)

라. 공무원 포상휴가 제도 신설(안 제24조제13항)

○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근거법규

가.「지방공무원법」제59조

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1항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속기관장"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직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소속기관인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을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잔여"를 "남은"으로 하며,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월할계산한다"를 "월할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월할계산에 의하여"를 "월할 계산에 따라"로, "소숫점"을 "소수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또는 신병교육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 ----------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비상근무등) ① (생 략)	제7조(당직·비상근무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 ② (생 략)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 구청장----------공무원----------.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인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구청장----------.
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소속공무원---------- 부모 생신일 또는 제삿날----------.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공무원에게---------. ---------- 공무원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없을 때에는 ----------.
⑤ 삭 제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⑥ 구청장---------- 남은 ---------- 범위 ---------- 다음연도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 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② ---------- ---------- ---------- **해당 연도**------ ---------- ----**월할 계산한다.** ---------- ---------- ----------, **월할 계산에 따라**---------- **소수점**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병가) ①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삭 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⑥ ~ ⑨ 삭 제	
⑩ ~ ⑪ (생 략)	⑩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또는 신병교육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137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30.(금), 천병태 의원 외 10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7. 3.(월)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7. 12.(수)

2. 제안설명 요지(천병태 의원)

가. 개정이유

1)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와 그 부모에게 적정한 예우를 통하여 가족의 화목 도모
2)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안 제8조, 제24조제2항 및 제4항)
2)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2조)
○ 「공무원증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3) 자녀의 군 입영 시 특별휴가 제도 신설(안 제24조제12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 또는 신병교육 퇴소 당일 특별휴가(1일)
4) 공무원 포상휴가 제도 신설(안 제24조제13항)
○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영환)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자, 자녀의 군 입영 당일 또는 신병교육 퇴소 행사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비상근무 등 현안 업무추진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 조직의 활력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